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자 2차 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 (<http://www.naunkhapt.com>)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내 분양 상담전화(☎063-464-0327~8)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모집공고는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경매사업 중 2차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2.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1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 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군산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자[2021.07.14.(포함)이전부터 계속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 12. 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 12. 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내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 %** 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naunkh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100 %** 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 %**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할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2.07. 25 .(월) | 2022.07. 26 .(화) | 2022.07.27.(수) | 2022.08.04.(목) | 2022.08.16.(화) ~ 2022.08.18.(목) 3일간 |
| 방 법 | 인터넷 청약(09:00 ~ 17:30) | 인터넷 청약(09:00 ~ 17:30) | 인터넷 청약(09:00 ~ 17:30) |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 장 소 |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한국부동산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2.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
|----------|--------------------|
| 1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군산시 주택행정과-22960호(2022.07.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6층 10개동 총 993세대 중 2차 일반분양 54세대

[특별공급 26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 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 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5세대,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1 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09 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자 | 계 | | |
| 민 정 주 택 | 2022000477 | 01 | 59.7894A | 59A | 59.7894 | 20.7243 | 80.5137 | 38.9783 | 119.4920 | 29.7545 | 22 | 3 | - | 7 | 1 | - | 11 | 11 | 1 |
| | | 02 | 59.9654B | 59B | 59.9654 | 20.6418 | 80.6072 | 39.0931 | 119.7003 | 29.7890 | 6 | - | - | 2 | 1 | - | 3 | 3 | 1 |
| | | 03 | 73.4280 | 73 | 73.4280 | 24.9219 | 98.3499 | 47.8698 | 146.2197 | 36.3460 | 17 | 2 | 3 | 1 | 2 | - | 8 | 9 | 1 |
| | | 04 | 84.9912A | 84A | 84.9912 | 27.4087 | 112.3999 | 55.4081 | 167.8080 | 41.5383 | 9 | - | 2 | - | 1 | 1 | 4 | 5 | 1 |
| 합 계 | | | | | | | | | | | 54 | 5 | 5 | 10 | 5 | 1 | 26 | 28 |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 주택 형 | 구분 | 층별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1회(10%) | 입주시 |
| | | | | | | | 계약시 | 2022-09-02 | |
| 59A | 101동4호, 105동1호 | 2층 | 1 | 33,602,707 | 176,287,293 | 209,890,000 | 20,989,000 | 20,989,000 | 167,912,000 |
| | 106동 3~4 호 | 3~4층 | 4 | 33,602,707 | 180,887,293 | 214,490,000 | 21,449,000 | 21,449,000 | 171,592,000 |
| | 108동 2 호 | 5~9층 | 5 | 33,602,707 | 187,657,293 | 221,260,000 | 22,126,000 | 22,126,000 | 177,008,000 |
| | 109동 1~4 호 | 10~14층 | 4 | 33,602,707 | 194,437,293 | 228,040,000 | 22,804,000 | 22,804,000 | 182,432,000 |
| | 110동 1~2 호 | 15층 이상 | 8 | 33,602,707 | 196,617,293 | 230,220,000 | 23,022,000 | 23,022,000 | 184,176,000 |
| 59B | 103동 6 호 | 2층 | 1 | 33,641,729 | 176,478,271 | 210,120,000 | 21,012,000 | 21,012,000 | 168,096,000 |
| | 105동 6 호 | 5~9층 | 2 | 33,641,729 | 187,858,271 | 221,500,000 | 22,150,000 | 22,150,000 | 177,200,000 |
| | 107동 6 호 | 10~14층 | 1 | 33,641,729 | 194,628,271 | 228,270,000 | 22,827,000 | 22,827,000 | 182,616,000 |
| | 108동 3 호 | 15층이상 | 2 | 33,641,729 | 196,928,271 | 230,570,000 | 23,057,000 | 23,057,000 | 184,456,000 |
| 73 | 101동 2~3 호 | 2층 | 1 | 41,046,714 | 207,083,286 | 248,130,000 | 24,813,000 | 24,813,000 | 198,504,000 |
| | 103동 4 호 | 3~4층 | 3 | 41,046,714 | 212,653,286 | 253,700,000 | 25,370,000 | 25,370,000 | 202,960,000 |
| | 105동 4~5 호 | 5~9층 | 4 | 41,046,714 | 220,873,286 | 261,920,000 | 26,192,000 | 26,192,000 | 209,536,000 |

| | | | | | | | | | |
|-----|------------------------------------|--------|---|------------|-------------|-------------|------------|------------|-------------|
| | 107동 4-5 호 | 10~14층 | 4 | 41,046,714 | 229,223,286 | 270,270,000 | 27,027,000 | 27,027,000 | 216,216,000 |
| | 108동 4-5호, 110동3호 | 15층 이상 | 5 | 41,046,714 | 232,013,286 | 273,060,000 | 27,306,000 | 27,306,000 | 218,448,000 |
| 84A | 102동 1 호 104동 1~2 호 107동 2 호 | 1층 | 1 | 46,910,536 | 230,369,464 | 277,280,000 | 27,728,000 | 27,728,000 | 221,824,000 |
| | | 2층 | 1 | 46,910,536 | 236,659,464 | 283,570,000 | 28,357,000 | 28,357,000 | 226,856,000 |
| | | 3~4층 | 3 | 46,910,536 | 242,949,464 | 289,860,000 | 28,986,000 | 28,986,000 | 231,888,000 |
| | | 5~9층 | 1 | 46,910,536 | 252,509,464 | 299,420,000 | 29,942,000 | 29,942,000 | 239,536,000 |
| | | 10~14층 | 1 | 46,910,536 | 261,949,464 | 308,860,000 | 30,886,000 | 30,886,000 | 247,088,000 |
| | | 15층 이상 | 2 | 46,910,536 | 265,089,464 | 312,000,000 | 31,200,000 | 31,200,000 | 249,600,000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출납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비용 별도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2년 9월 준공예정이며, 발코니확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 발코니확장(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코니확장(유상옵션) 미계약 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장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분양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며(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국가유공자·장애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59A | 59B | 73 | 84A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10%) | 국가유공자 등 | 1 | - | - | - | 1 |
| | 장애인 | 1 | - | 1 | - | 2 |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1 | - | 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0%) | - | - | 3 | 2 | 5 | |
| 신혼부부 특별공급(20%) | 소득기준 | 7 | 2 | 1 | - |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10%) | 소득기준 | 1 | 1 | 2 | 1 | 5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3%) | - | - | - | - | 1 | 1 |
| 합 계 | | 11 | 3 | 8 | 4 | 26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9 1270 2134 1430">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기타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 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대부담당
 - 장애인 : 전북도청 노인장애인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시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 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군산시 1년 미만 및 전라북도)보다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전북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0 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가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8,687,332원~ 10,424,797원 |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10,424,798원~ 13,899,730원 |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으로 인정)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또는 그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 colspan="2">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colspan="2">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 colspan="2">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 colspan="2">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 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자
- 자격요건
 -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 및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1인 가구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주 택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주 택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존 신청자 청약 신청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가능하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의 직계비속 전원이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 처리 될 수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 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포함)을 3년 이상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 구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신청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 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가 군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니다.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 구 분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1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및 가점제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총점 | 84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 | | |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 2022.07.2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군산시 나운동 834-8,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063-464-0327-8 |
| 일반공급 | 1순위 | 2022.07. 26.(화) 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2.07. 27.(수) 09: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금융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 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음.
- 청약 신청 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 및 청약 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분양사무소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31.)로, | 본인 부양가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관련”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
| |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 자녀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 |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 |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 | |
| | | ○ | 자산입증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p>「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제1항제2호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p> | | | | | | |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산산정기준표 |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 |
| | | ○ |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 |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 |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 | | | |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 | | |
| | | ○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p>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자격</th> <th>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장 • 세무서 </td> </tr> <tr> <td>자영업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td> </tr> </tbody> </table>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장 • 세무서 | 자영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 | | | | | | |
|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장 • 세무서 | | | | | | | | | | | |
| 자영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 | | | | | | | | | | |

| | | | |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당청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O | 자산입증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제1항제2호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부적격 당청 통보를 받은 자 | O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불가함 |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O | 신분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O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청자 서류 제출 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

| | | | |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시 신고서(부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시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무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자 확인각서(분양사무실 비치) 전년도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사실증명서(신고소득사실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자격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세무서 |

■ 일반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공급 | ○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래대조일 :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비속은 1년) ※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중인(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

|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직계존속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 ○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청약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거주신청자가 전라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 12. 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 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정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 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08.04.(목)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8.16.(화)~2022.08.18.(목)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장소 :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4 - 8 2층) ※ ☎ 063-464-0327~8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naunkhapt.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2.08.04.(목) ~ 2022.08.13.(토) (10일간)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08.04.(목)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 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에 따른 공급대상자)

| 주택형(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조합 | 보유지 | 해양경찰 | 일반분양(1차) | 일반분양(2차) | 총 계 |
|-------------|-------|-----|-----|------|----------|----------|-----|
| 59.7894A | 59A | 182 | 4 | 4 | 178 | 22 | 390 |
| 59.9654B | 59B | 88 | 0 | 0 | 82 | 6 | 176 |
| 73.4280 | 73 | 163 | 0 | 0 | 86 | 17 | 266 |
| 84.9912A | 84A | 87 | 2 | 0 | 36 | 9 | 134 |
| 84.9241B | 84B | 15 | 1 | 1 | 4 | - | 21 |
| 84.9220C | 84C | 0 | 0 | 0 | 6 | - | 6 |
| 계 | | 535 | 7 | 5 | 392 | 54 | 993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구분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 자격확인 서류제출 장소 |
|---------------------|---|-------------------------------------|
|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22.08.05.(금) ~ 2022.08.15.(월) 11일간, 10:00 ~ 17:00 | - 사업주체_분양사무실 :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4-8, 2층 |
|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합니다.

■ 계약체결(자격확인)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구비 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특별공급 포함) | 0 |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본인 |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0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공급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대리인 불가) |
| | 0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 로 발급(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 | 0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비치 |
| | 0 | | 실거래신고 일괄동의서 | 본인 |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비치 |

| | | | | |
|---------------------------------------|---|-----------|-------------------|--|
| | 0 | 서약서 | 본인 |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 비치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우주택)등] |
| 특별공급 | 0 | 특별공급 구비서류 | - |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본문 4.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내용 확인) |
| 일반공급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0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당자 | ·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 | 0 | 복무확인서 | 신청자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0 | 무주택 소명자료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0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0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0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0 |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 0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0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0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은 접수 장소에 비치 |
| | 0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0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
|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p>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p>-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p> |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2022.08. 16.(화) ~ 2022.08.18.(목) 3일간, 10:00 ~ 16:00 |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4-8, 2층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 759301-01-633012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2인)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청약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중도금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알선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2년 9월 준공예정이며, 발코니확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 발코니확장(유상옵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코니확장(유상옵선)미계약 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유상옵선) 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 구 분 | 59A | 59B | 73 | 84A |
|--------------|-----------|-----------|-----------|-----------|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 6,600,000 | 6,930,000 | 7,920,000 | 9,130,000 |

■ 발코니확장(유상옵선) 공사비 납부계좌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703-954711 | 금호건설(주)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확장의 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지만 가능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 만큼 돌출될 수 있음) 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의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피난구와 연결되어 있는 실은 철제문이 설치되며,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전등 설치위치가 층별로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설치 위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방창은 43mm 삼중 양면로이유리 프레젠틱창으로 설치되며(84C타입 제외), 안전을 위해 열리는 각도는 제한되며 난간대는 설치되지 않으나 본공사 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난간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확장세대의 발코니 확장 부분 샷시는 22mm 로이복층유리 + 22mm 복층유리 (이중창)로 시공하며,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22mm 복층유리 단창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써(추가 전용부분 제외)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움)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본 아파트는 2022년 9월 준공예정이며,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9

유의사항

■ 일반 공통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이전고시, 대지확정측량, 공부정리 등의 절차로 인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위세대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성) 과정 및 실 공사 시 일부 인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커뮤니티,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집기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자료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며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옥외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단지 홍보용 싸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 포함한 전기&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추가 요구 시 당사와 합의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건축물 측면에 측량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성시험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배정은 일정 지역(주소)에 거주하는 학생을 특정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본 아파트(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은 군산신풍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나,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배정은 현재 군산시에 전 가족이 학교군 및 중학교 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군(초등학교)에서 학교군(중학교)으로 지원하는 경우 12개 중학교를 12지망까지 중복되지 않게 선택하여 지원, 전산 추첨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및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통신사별로 해당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도로 간에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84C형의 테라스는 해당 계약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래층 세대의 보수 및 기타 공적인 용무를 위해 관리사무소의 허락이 있을 경우 해당 테라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기반시설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대수에 포함되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시 해당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업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불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바닥 마감재 미 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제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색상, 재질 변경 없음, 동급이상 적용),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매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싱크대 하부에 설비기기(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발코니에는 보일러와 보일러 하부 배관커버가 설치되고 보일러 상부에서 외벽으로 연도가 노출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부위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위생기구, 악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풍통 등은 위치 및 개소,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아래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실외기실에는 응축수용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배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장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입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대피공간)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각 세대에는 보일러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A, B형에 설치된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73형, 84A형은 그릴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텐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혹은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난방분배기, 에어컨 냉매매립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층부터 10층에는 세대내(침실1 발코니 혹은 하향식피난구 또는 실외기실)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가 침실1 발코니에 설치되는 타입의 경우 외부 투시형 난간 높이는 기준층(1.0m)과 다르게 10cm 낮은 0.9m 높이로 설치됩니다.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의 간섭으로 인해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59A,B,84A타입;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장소, 인접세대 피난구 및 대피공간은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이나 인접세대 피난 등이 불가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위치 및 제품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향식 피난구는 층별 해당실에 교차 시공됨)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혹은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 현장의 전열교환기는 H13급 해파필터 및 내부 순환모드가 적용되어 있음)
-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배기구의 위치, 모양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됩니다.(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 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실 발코니 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 시공시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보강물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강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기준층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기준과 상이합니다.
- 천장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시(화재 등) 대피를 위해 59A,B 타입은 실외기실에, 84A타입은 발코니3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피난구 설치 위치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59A,B 타입은 실외기실 내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84A형의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은 단열문이 설치되나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3타입은 발코니1에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 됩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우수, 배수 입상 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 내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공용, 부부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나, 별도의 난방용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물질약 정책의 일환으로 세대 수압을 2.05kg/cm2 으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류(콘센트, 조명기구, 환기구 등)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은 각종 기구류 설치로 인해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선가림막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등 스위치, 콘센트 마감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 단지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옥상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은 프로젝트창 설치시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 됩니다.(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상형과 타워형의 주동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시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 공간, 1층 또는 옥상 외부공간 등에 임의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상의 주동 근처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암롤박스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 및 주동 출입 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도로에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냄새,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외벽, 공용부 마감재 등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변경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외부 및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구대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등은 실제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공간은 일부 동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일부 동의 경우 주차공간과 동 출입구가 이격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도서와 다를 수 있어, 최종 사용승인인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되고, 3층 이하 층의 경우 측벽 석재, 전후면은 석재 뿔칠로 시공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및 색채, 주동 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 패턴, 옥탑 및 지붕디자인, 문주, 부대복리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이동통신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계단 변경(삭제), 특히 1층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바닥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층 세대내 층고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조경시설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단지 내 일부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용 급수 계량기는 엘리베이터홀 PD 내부에 설치됩니다.
- 단지 내에 부출입구 인근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진입로와 일자배치 세대는 차량 불빛과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차량이동에 따라 저층 세대의 경우 차량 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 및 인승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 및 세대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TV 공청 안테나는 105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5m, 차로의 높이는 2.3m입니다.(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2.3m 미만임)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붕형태는 평지붕 형태이고, 107동에는 태양광 발전 집열판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수량, 집열판 각도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하부세대에는 조망침해, 미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앞 조업주차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의 조업을 위한 공간으로 아파트 입주인이 점용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지상 17대(주출입구 인근 4대, 부출입구 인근 13대)가 설치되며, 주출입구 인근에 조업주차 구간이 1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출입구 인근의 지상주차장은 총 17대로 근린생활시설 13대와 아파트 4대로 구획됩니다.
- 동출입구 1층 엘리베이터 홀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필로티 등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근접동(108동 앞 DA)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정검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옥외 운동시설, 파고라, 휴게의자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각 동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한 제습기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8동 지하(예정이며, 추후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음)에는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5동의 일부 2층 세대는 단지레벨 차이 및 1층 주민공동시설 계획으로 세대의 일부가 지면과 접하였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105동은 지하1층 주차장과 같은 레벨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부터 1층으로 시작되어 다른 동과 층 표기가 상이합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DA)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하고,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7동 측벽상부에 조명형 비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옥상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되고 일부 휴게공간 등 조경공간에 의하여 이에 따른 소음 등 인접 저층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경비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가구 및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을 이용 시 각 동별 출입구, 계단실 등이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도로 및 기반시설"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갯수에 포함되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시 해당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 본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등의 변경으로 대지 경계선 주위 아파트 진·출입 도로, 보행자로, 단지 경계, 인접도로 및 도로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승인변경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서측 대학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이전, 설치되며 실제시공 시 관련기관 정책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서측 대학로변에 높이 6M, 길이 약 150M의 방음벽이 설치되며, 실제시공 시 인허가 과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높이, 길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주출입구 전면의 교차로는 일반교차로로 나운주공3단지 사업구역은 나운주공3단지 사업시행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개발계획, 조망권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설계 변경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및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 및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경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 시 시행자의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채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풍 등은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 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예정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재의 품귀,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기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시기 : 2022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GX,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 8개소 설치)

• 피트니스센터 내에는 기본 마감으로 제공하며, 가구, 집기 및 운동 시설물 등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 | 적용 | 1등급 |
|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 | 적용 | 1등급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
| | 조명설치 설치(다목) | 적용 |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명 : 군산 나운주공2차 재건축아파트 | 인증번호 : 2015-101 |
| 건축주 : 나운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 준공(예정)일 : 2017년 10월 | 유효기간 : 2015. 9. 15. ~ |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31번지 외 2필지 |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
| 층 수 : 지상26층, 지하2층 |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
| 연면적 : 134,806.0227㎡ (993세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
| 설계자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 |

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15년 9월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군산 나운주공2차 재건축아파트
 2. 신청자 : 나운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31번지 외 2필지
 4. 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 | |
|---------------|----------------------------|------|
| 성능별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생활소음 차단성능 | 생활소음 차단성능 | ★★ |
| 중량차량 차단성능 | 중량차량 차단성능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
| 계단상 경계벽의 차단성능 | 계단상 경계벽의 차단성능 | ★★★★ |
| 키부소음 | 키부소음(도어, 창도)에 대한 성능 -의 소음도 |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 |
|-------------------------|-------------------------|------|
| 성능별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가면성 | 가면성 | ★★ |
| 수리용이성 | 수리용이성 | ★ |
| 내구성 | 내구성 | - |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내도움의 시에안정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내도움의 시에안정성) |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 |
|--------------|--------------|------|
| 성능별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수자원 절약 | 수자원 절약 | ★★★★ |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 ★★★★ |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 ★★★★ |
| 지구온난화방지 | 지구온난화방지 |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 |
|------------------------|------------------------|------|
| 성능별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커뮤니티 편의 시설 (주공간의 조성수준) | 커뮤니티 편의 시설 (주공간의 조성수준) | ★★ |
| 보행자 도로 | 보행자 도로 | ★★★★ |
| 교통부하 저감 | 교통부하 저감 | ★★★★ |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사회적 약자의 배려 | - |
| 환경보존 | 환경보존 | - |
| 생활안전 | 생활안전 | ★★★★ |
| 쾌적적인 생활환경 | 쾌적적인 생활환경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5년 9월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인)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용역계약금액(원, VAT포함) | 비고 |
|-------|---------------------|--------------------|--------------------------------------|
| 건축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2,345,681,8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 전기 | 덕원기술단 | 657,006,700 | |
| 통신/소방 | (주)케이제이조합엔지니어링 | 550,000,000 |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금2,687,320,000원 | 2022-0121-00044132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
|--|
|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
|--|
|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시 행 사 | | 시 공 사 | |
|--------|------------------------|---------------------|-------------------------------|-----------|
| | 상 호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금호건설 주식회사 | 대상건설 주식회사 |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78-1, 2층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4층404호(별내동) | |
| 법인등록번호 | 211171-004519 | 110111-0134877 | 134411-0015750 | |

- **홈페이지(사이버모델하우스) :** 군산 금호어울림 센트럴 홈페이지 (<http://www.naunkhapt.com>)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위치 및 분양문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4-8 , 2층 (☎ 063-464-0327-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분양 사무실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